제 30 호

최 고 공 고 문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6년 05월 27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세대주 성명	성 명 생 년 월 일	주 소	지연 신고사항
정**	정** 1983-03-25	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623번안길	무단전출
이**	이** 1957-07-15	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156번안길	무단전출
장**	장** 1967-04-25	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	무단전출
조**	조** 1969-08-25	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156번안길	무단전출
정**	정** 1981-02-21	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156번안길	무단전출

※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등록,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제2항).

(담당자 : 구 성서 문의전화 : 032-560-3259)

2016년 05월 19일

검단1동장 직인